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24일 04시 58분



출생신고

**사망신고**

혼인신고

이혼신고

개명신고

## 사망신고

### ■ 신고장소

시(구)·읍·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
(특별시청, 광역시청, 도청, 군청에서는 불가함)

### ■ 사망신고 의무자

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

### ■ 사망신고 적격자

- 비동거친족· 등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
- 사망장소의 등장 또는 통·이장

### ■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사망일시 : 24시간제(사망일시가 미상인 경우 접수 불가)
- 사망장소 : 가능한 한 사망지점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

### ■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서류

-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
-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(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첨부할 수 없는 경우)
  -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
  - ② 부대장 등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
  - ③ 인우증명인(2인)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(단, 인우증명인 2인 외에 신고인 별도로 있어야 함)
    - ※ 인우증명인 출석 : 인우증명인의 신분증 지참
    - ※ 인우증명인 불출석 :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
    - ※ 증명인이 등·리·통장일 경우: 1명, 등·리·통장 증명 서면 첨부

 과태료

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,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

---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